【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】 근거 :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6조

# 기 관 명

수신자

제 목 **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**

귀하(귀사)가 20 . . .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내용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청 구 인 | 성 명<br>(상 호) | | 생 년 월 일<br>(사업자등록번호) | |
| | 주 소<br>(사업장) | | | |
| 심판 사건번호 | | (결정일 20 . . .) | | |

경 정 결 정 사 항 (단 위 : 원)

| 연도·기분 | 세 목 | 구분 | 당초결정 | 경정결정 | 감소된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과세표준 | | | | |
| | | 세 액 | | | | |
| | | 과세표준 | | | | |
| | | 세 액 | | | | |
| | | 과세표준 | | | | |
| | | 세 액 | | | | |
| | | 과세표준 | | | | |
| | | 세 액 | | | | |
| 그 밖의 조치사항 | | | | | | |

① 이 내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귀하(귀사)가 심판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.

② 다만,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업무 처리결과인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**기 관 장** 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 : 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결재자(직위/직급) 서명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시행 처리과명 - 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 - 일련번호(접수일자)
우 주소 /홈페이지 주소
전화( ) , 전송( ) /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/공개구분
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/㎡)